

3·1운동 공판기록을 통해 본 충북 출신 '민족대표'의 독립사상

박 걸 순*

-
- I. 머리말
 - II.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부정과 독립의 확신
 - III. 국제 정세와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인식
 - IV. 東洋平和論과 先朝鮮獨立論
 - V. 상반된 政體論의 주장
 - VI. 播種論의 피력
 - VII. 종교계몽주의자의 한계
 - VIII. 맺음말
-

I. 머리말

충북지방은 3·1운동의 초기 계획 단계를 주도한 이른바 '민족대표' 33인 중 6인을 배출한 고장이다. 그들은 민족대표의 수장이었던 손병희를 비롯하여 권동진·권병덕 등 천도교계 3인과, 신석구·신홍식 및 정춘수 등 기독교계 3인이다. 더구나 이들은 권동진을 제외하고는 당시 청주군 출신으로서, 일개 군에서 5인의 민족대표를 배출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최다하며 자랑할 만한 일이다.

3·1운동사에서 민족대표의 대표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이는 3·1운동을 영웅사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중사관으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의 차이, 분단과 독재 등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상황의 차이 등 복잡한 인식이 개재되어 있다. 대개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민족대표의 대표성과 역할에 대한 긍정론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분위기에서 부정론이 지배적이 되었다. 부정론은 그들이 외세 의존적이고 타협적이었으며, 반민중성을 지니는 등 부르주아적 민족운동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초기 조직 단계와 민중운동 단계를 구분하고, 초기 조직 단계의 역할을 긍정하여 3·1운동의 기폭제에 점화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한적 긍정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¹⁾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민족대표에 대한 논의로는 愼鏞廈, 「三一獨立運動의 社會史(下)」, 『韓國學報』 31, 일지사, 1983; 강만길,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창작과 비평』 63, 1989; 정연태,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여계층」, 『3·1민족해방운동연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편, 청년사, 1989; 김

민족대표에 대한 논의는 3·1운동사 연구의 부진과 함께 한동안 중단되었다. 그런데 근래 개인 연구를 통해 서울과 그들과 연고가 있는 지방의 시위가 연계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민중사관적 비판론을 반박하며 민족대표들이 역사변혁을 이끈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

이처럼 민족대표의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3·1운동 당시의 역할 외에 그들이 이후 이른바 민족대표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켜 냈느냐 하는 행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들 가운데에는 민족운동선상에서 이탈하여 3·1정신을 훼손한 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충북 출신 민족대표의 공판기록을 통해 그들의 독립사상을 검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의 독립사상을 표출한 것으로는 사실심리를 위주로 한 공판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囹圄의 처지에서 자신에게 가해질 극형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제 경찰과 검사 및 판사를 상대로 육성으로 토로한 취조서나 신문조서는 그들의 독립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3·1운동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의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것은 별로 없으며, 그나마도 충북 출신 인물들에 대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³⁾ 이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논고가 없지는 않으나, 중앙사 차원의 것으로서 지역적 배경이나 연고가 전제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판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독립사상의 분석을 통해 3·1운동사의 귀납적 해석을 시도함은 물론, 이들을 지방의 인물로서 재조명하고 자리매김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II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부정과 독립의 확신

대부분의 민족대표들은 일제의 강제 병합과 식민지 지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다. 손병희는 한일병합에 대한 감상을 묻는 일본인 판사의 질문에 자신은 중립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동학혁명 때 인민의 행복을 얻기 위해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언젠가는 정부가 전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감상이 없다고 말하였다. 또

성보, 「3·1운동에서 33인은 ‘민족대표’가 아니다」, 『역사비평』 7호, 1989;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반, 「3·1운동」, 『쟁점과 과제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1990; 이정은, 「3·1운동 민족대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2002 등 참조.

2) 허동현, 「3·1운동에 미친 민족대표의 역할 재조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3) 민족대표의 재판기록을 분석한 논고로는 李炫熙의 「三一運動 裁判記錄을 통해서 본 天道敎代表들의 態度分析」(『韓國思想叢書』 4, 한국사상연구회, 1980)이 있고, 충북 출신 민족대표에 대해 검토한 글은 박결순의 「청원의 3·1운동과 청원 출신의 민족대표」(『淸原文化』 제8호, 청원문화원, 1999)가 있는 정도이다.

한 그는 러일전쟁 때 자신이 군자금 1만원을 일제에 헌납하고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할 때 천도교에서 지원한 것은 일본이 깨어지면 동양이 파멸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⁴⁾ 이 부분은 손병희의 정세 인식과 행적에 대해 평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손병희는 한민족이 절대 일제에 동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일제도 세계 대세에 따라 한민족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은 국가 관념은 없고 민족 관념만 있을 뿐인데, 일제가 병합 후 각종 압박과 차별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을 절대 동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는 박은식이 주장한 혼백론이나, 민족주의사자들이 주장한 관념론적 역사인식과 일치하는 사유이다. 또한 그는 독립선언이 오히려 일본의 정책과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을 독립시키면 중국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장래 일본이 동양의 맹주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유리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⁵⁾

일제는 손병희가 동학혁명 당시 교주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스스로 정치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의심하였다. 이는 3·1운동이 천도교에 의한 정변으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서, 실제 그가 3·1운동 직후 조선민국임시정부나 대한민간정부 등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반적인 대통령에 추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그는 이에 대해 부정하였다. 경무총감부에서 일인 검사가 손병희에게 천도교도 전체가 구한국의 국권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거나,⁶⁾ 판사가 권동진에게 손병희 이하 천도교 신도가 정치적 기관으로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추궁한 것은 천도교가 정치적 비밀결사이고 이번 사건이 손병희의 정치적 야욕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⁷⁾

일제가 취조와 재판과정에서 손병희가 천도교의 실질적 실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기에 부심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제는 경무총감부의 신문 때는 물론 예심에서도 그가 실질적인 천도교 교주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따졌다. 특히 일제는 그가 교주를 그만둔 뒤에도 천도교 자금으로 운동 자금을 충당한 것 등을 예로 들며, 비록 교주를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신도들에게 선생으로 불리며 사실상 천도교를 지휘하고 있다고 보았다. 손병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교주는 사임하였으나 40년 동안 관계하였으므로 돕고 있다고 말하였다.⁸⁾ 또한 자신이 독립운

4) 「孫秉熙 신문조서(제1회)」, 1919. 4. 10,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62쪽).

5) 「孫秉熙 신문조서(제1회)」, 1919. 4. 10,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4~65쪽).

6) 「孫秉熙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이병헌, 『三一運動秘史』, 80쪽).

7) 「權東鎭 신문조서(제2회)」, 1919. 7. 1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51쪽).

8) 「孫秉熙 신문조서(제1회)」, 1919. 4. 10,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0쪽). 한편 그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실을 신문 당하였고, 당당히 인정하였다(「孫秉熙 신문조서」, 1919. 8. 21, 고등법원,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2, 16쪽).

동을 위해 교도들에게 자금 모금을 지시했다고 신문하자, 자신이 돈을 모금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⁹⁾ 일제는 권동진에게도 비록 천도교의 표면상 대표는 박인호이지만 실권은 손병희가 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권동진은 이를 인정하였다.¹⁰⁾ 또한 권동진은 박인호를 민족대표로 가입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인호가 정치적 관심도 없었지만, 손병희만 가입해 있으면 독립운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입시킬 필요가 없어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말하였다.¹¹⁾

당시 천도교의 교주는 박인호였으나 실권자는 손병희였다는 사실은 박인호의 신문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問 : 그대는 천도교에서 제일 두목이 아닌가?

答 : 그렇다. 가장 윗자리이다.

問 : 그러면 천도교의 소지금을 출입하는 일은 그대에게 전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答 : 형식상에서는 내가 가장 위에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孫秉熙의 명령이 없으면 일제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 5천원은커녕 단 5원의 돈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지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問 : 그렇다면 천도교의 사실상 제일 두목은 孫秉熙인데 그대는 간판이 되어 있을 뿐인가?

答 : 전적으로 그렇다.¹²⁾

일제가 손병희를 상대로 정교분리에 대해 따지고, 천도교를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로 몰아붙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손병희는 자신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의 독립을 기도한 것이며, 종교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한 것이지,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다고 응수하였다.¹³⁾

問 : 피고는 지금 천도교에서 어떠한 직에 있는가?

答 : 전술한 바와 같이 교도, 그 밖의 사람에게서 선생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직제상의 교무에는 맡은 것이 없다. 단순히 실제에 있어서 상의가 있을 때 그 지시를 하고 있을 정도이다.

問 : 그러면 피고는 천도교에 있어서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答 : 그렇다.

問 : 그리고 천도교도 1백만 명의 숭배의 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答 : 그렇다.

9) 「孫秉熙 신문조서(제3회)」, 1919. 7. 14,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27쪽).

10) 「權東鎭 신문조서」, 1919. 8. 20, 고등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2, 40쪽).

11)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46쪽).

12) 「朴寅浩 신문조서」, 1919. 8. 29, 고등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2, 117~118쪽).

13) 「孫秉熙 신문조서(제3회)」, 1919. 7. 14,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손병희는 권동진·오세창·최린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만세운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측에서도 이 같은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는, '지극히 좋은 일'이니 그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¹⁴⁾ 이는 그가 3·1운동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니 종교를 떠나 연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¹⁵⁾ 손병희의 연합 지침은 초기 계획 단계를 주도했던 최린 등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최린은 독립운동은 '민족 전체에 관한 대사업'이므로 민족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와 당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니 독립에 대한 민족적 통일일을 이루기 위해 절대 합동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타 종단과 연합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⁶⁾ 손병희가 운동자금을 전담하면서까지 종교가 다른 기독교와 연합하도록 한 것은 3·1운동이 그의 개인적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손병희의 承禮(接待係)인 권병덕은 손병희의 뜻에 따라 3·1운동에 참가하였다. 권병덕은 손병희가 권병덕과의 관계를 묻는 신문에 '내 육신과 같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¹⁷⁾ 따라서 그는 손병희가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뜻과 행동을 같이 하고자 하였고, 손병희가 하는 일이면 누구든지 따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합병 당시에는 시천교도였기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천도교도가 된 후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일제의 민족 차별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독립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독립론을 펼쳤다.¹⁸⁾

권동진 또한 일제의 병합에 분명히 반대하며, 절대 일본과는 동화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병합 조약이 주권자 사이에서 원만히 체결된 듯하나, 이는 다수 조선 인민의 의사가 아니고 시대사조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¹⁹⁾

11, 129쪽). 손병희와 예심 판사 永島雄藏과의 정교분리 논쟁 내용은 다음과 같다.

問 : 피고는 천도교를 생명으로 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혼화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의 와중으로 뛰어 들 어 조선의 독립을 기도한다는 것은 피고의 사상에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떨가?

答 : 그것은 종교가 만족스럽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했는데, 종교가 만족스럽게 행해지지 못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종교가가 정치에 관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問 그러나 역사상 순정한 종교는 정치와 혼효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데, 천도교는 정치에 대한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이번 조선독립을 기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떨가.

答 국가가 종교를 도와주면 정치에 관계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에는 종교는 정치에 붙어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기도한 것이다. 나는 조선이 독립국이 되더라도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은 없는 것이다. 만약 내가 독립 후에 벼슬길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정치상의 야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만, 나에게서는 종교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14) 「孫秉熙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77쪽).

15) 「孫秉熙 신문조서(제2회)」, 1919. 4. 11,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8쪽).

16) 崔麟, 「自叙傳」(『韓國思想』 제4집, 1962, 165쪽)

17) 「孫秉熙 신문조서(제2회)」, 1919. 4. 11,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7쪽).

18) 「權秉惠 경찰신문조서」, 1919. 3. 1,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217쪽).

민족차별을 지적하며 동화불가론을 주장한 것은 정춘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병합 이래 정치와 교육 및 일반시책에 있어 민족차별에 불만을 지녀왔고 양 민족이 동화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독립운동을 하여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고 말하였다.²⁰⁾

신홍식도 비록 소극적 형태이지만 병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합병 이래 심중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천의라고 생각되어 참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강화회의가 개최되고 민족자결이 주장되는 좋은 기회에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것으로 믿었다고 말하였다.²¹⁾ 따라서 그의 소극적 병합 반대론은 3·1운동의 당위론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적 답변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신석구는 병합 반대의 이유로서 4천년 역사를 지닌 민족임을 표방하며 예심판사와 법정 논쟁을 벌였다. 특히 이른바 문화와 문명발전론과 시혜론 등 식민지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은 민족대표 중 가장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것으로 주목된다.

問 : 피고는 한일합병에 반대하는가?

답 : 그렇다. 조선은 4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타국에 병합되는 것은 누구든지 싫어한다. 나는 한일합병에 반대한다.

問 : 한일합병 전의 조선은 대단한 惡政으로서 인민은 노예와 같이 대우를 받고 있었으나, 합병한 후부터 자유와 행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답 :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독립국이 된다면 善政을 할 때가 필연코 올 것이다.

問 : 병합하여 영원히 선정을 하여 인민이 행복하면 좋지 않은가?

답 : 병합한 후 조선은 식민지로 되어 조선 사람은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조선 인민에게 행복이 올 리가 없다.

問 : 조선은 문화의 발전이 되지 않고 인민의 생활 정도가 일본보다 낮으므로 그 정도에 응하여 교육제도의 시설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대우를 말한다 하더라도 인민의 행복과 자유가 점차 커가고 있지 않는가?

답 : 조선 사람으로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도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일본 정신의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므로 병합에 반대하고 있다. 가령 중처가 있다면 치료할 수 있지 않는가?

문 : 그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합병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조선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문 : 그러면 피고는 조선의 국민성을 잃지 않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조선 독립을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답 :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²²⁾

19)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 1運動 I)』 11, 40쪽).

20) 「鄭春株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546~547쪽).

21) 「申洪植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12,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479~480쪽).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전면 부정한 만큼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확신하며 결연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대부분의 민족대표들이 그러하였으나, 특히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의 답변이 돋보인다.

손병희는 경찰 신문에 대해 조선 민족 대표자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평화롭게 목적을 수행하려 하나, 만일 불행하게 일본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든 계속 운동 목적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도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독립할 생각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독립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을 하려는 의사를 관철시키겠다고 하였다.²³⁾ 천도교도인 권동진과 권병덕도 손병희처럼 기회만 있다면 독립을 이룰 때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²⁴⁾ 또한 법정에서 법률적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하며 겁박하는 일인 판사에게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당당히 답하였다.²⁵⁾

기독교도인 신석구와 신홍식은 조선의 독립은 하느님의 뜻이라며 독립을 확신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타 종단과 함께 정치 행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번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신석구이다. 그는 서울 수표교 교회에서 목사로 있던 1919년 2월 12일경, 오화영으로부터 기독교계가 천도교계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때 신석구는 교역자가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과, 이질적인 천도교와 합작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해 번민하게 되었다. 그는 새벽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2월 27일경 '4천년 전해 내려오던 강토를 너의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곧 참가를 결정하였다고 한다.²⁶⁾ 따라서 그는 '上帝'께 맡긴 몸으로서 조선의 원수인 일본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신의 마음'으로 독립이 될 것으로 확신하였고, 한일합병에 반대했으므로 독립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이는 성경(마 5:44)에 근거하여 행동하되 독립의지만은 분명히 천명한 것이었다.²⁸⁾

신홍식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하느님의 의사'로 조선이 독립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독립운동의 지속 여부를 묻는 신문에는 최초의 운명이 막혔으니 말할 수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

22) 「申錫九 신문조서」, 1919. 5. 5, 경성지방법원(『三一運動秘史』, 497~498쪽).

23) 「孫秉熙 경찰신문조서」, 1919. 3. 1, 경무총감부 및 「孫秉熙 피고인 신문조서」(『三一運動秘史』, 73~81쪽).

24) 「權東鎭 피의자 신문조서」, 1919. 3. 10, 경무총감부; 「權秉憲 피의자 신문조서」, 1919. 3. 20, 서대문감옥(『三一運動秘史』, 185, 221쪽).

25)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 및 「權秉憲 신문조서(제1회)」, 1919. 4. 11,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 1運動 I)』, 11, 49, 81쪽).

26) 한국감리교회사학회편, 『신석구목사자서전』, 1990, 83~84쪽.

27) 「申錫九 경찰신문조서」, 1919. 3. 1,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491~494쪽).

28) 이덕주, 『신석구 연구』,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0, 114쪽.

히면서도 비록 몸은 간혀 있지만 총독이 선언서를 인정할 것이므로 독립운동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⁹⁾ 신흥식은 옥고를 치르는 동안 ‘육적 재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³⁰⁾ 이 영적 체험은 향후 그가 민족운동을 계속하도록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³¹⁾

그러나 정춘수는 모호한 사유로 태화관의 독립선언식에도 불참하였고, 신문과정에서도 다른 민족대표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민족대표들이 끝까지 독립투쟁을 하겠다고 한 반면, 그는 자치 청원을 바라는 것이지 독립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며 자기변호를 하다가 결국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독립운동을 그만두고 종교 사업이나 하겠다고 말하였다.³²⁾ 이는 1937년 이후 그가 민족운동선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III 국제 정세와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인식

3·1운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개조의 국제 정세를 민족운동으로 활용한 결과였다. 당시는 군국주의 국가의 패전과 연합국 측의 민족자결주의 제창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해방,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풍미하는 세상이 되었다.³³⁾

천도교 측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개전과 경과를 예의 주시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천도교 측에서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와 천도구국단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한 것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비한 것이었다. 특히 손병희가 이종일에게 천도구국단이 독립국가 건설의 수임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측 지도부가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사 하는 바 크다.³⁴⁾

손병희는 3·1운동 이전부터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독립할 생각’을 지니고 세계정세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1919년 1월경 영국이 화란을

29) 「申洪植 경찰신문조서」, 1919. 3. 1, 경무총감부 및 「申洪植 피의자 신문조서」, 1919. 3. 12,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478~482쪽).

30) 신흥식은 이때의 체험을 「영적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기독신보』 1925년 1월 28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8회 연재하였다.

31) 김권정, 「일제하 신흥식의 기독교 민족운동과 사회사상」, 『韓國教會史學會誌』 제18집, 한국교회사학회, 2006, 14~15쪽.

32) 「鄭春株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21, 서대문감옥(『三一運動秘史』, 542~553쪽).

33) 이만열, 「민족운동과 민족자결주의」,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 11, 국사편찬위원회, 1992, 265~266쪽.

34) 박결순, 「옥과 이종일의 사상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참조. 天道救國團은 名譽總裁 孫秉熙, 團長 李鍾一, 副團長 金弘奎, 總務 張孝根, 涉外 申永求, 行動隊長 朴永信으로 조직되었다(『默菴備忘錄』, 1914년 8월 23일 및 8월 31일, 1916년 3월 31일자).

독립시켰다거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³⁵⁾ 그는 민족자결주의가 세계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번 기회’를 ‘千載一遇의 好機’로 인식하고 동지와 교도들을 독려했다.³⁶⁾

민족대표들이 지녔던 국제 정세 인식은 손병희와 권동진 등 천도교 대표들이 수립한 기본 지침이 반영된 독립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중에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3·1운동 직후 민족대표들의 독립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용운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는 20세기 초두부터 인류는 사상이 점점 새로운 빛을 띠어 미래의 대세는 침략주의의 멸망, 자존적 평화주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³⁷⁾

손병희 등이 크게 기대한 것은 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였다. 손병희는 민족자결주의 제창 소식은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의 ‘피를 끊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는 개조 될 것이라고 여겼다.

“...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은 우리들의 피를 끊게 하는 주장이며 2천만의 생명을 상실한 이번 유럽전쟁 그리고 민족자결의 제의에 의하여 세계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일본인의 사상도 변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선을 독립시키면 중국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며 장래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⁸⁾

손병희는 강화회의에 일본이 5대국의 일원으로 열석하고 있고, 이 회의가 민족 평화 등의 권리를 의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당연히 조선의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라 믿었다. 또한 신문지상에 영국이 애란을 독립시킨 기사를 보고 일본도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³⁹⁾

조선의 독립이 일본에게도 유리하다는 논리로 일제를 설득하려 한 것은 권동진이나 신석구의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권동진은 조선이 일본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만일 일본이 다른 나라와 싸울 경우 조선이 일본에 화근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하여 투쟁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⁴⁰⁾

35) 「孫秉熙 신문조서(제1회)」, 1919. 4. 10,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4쪽). 당시 그는 『경성일보』, 『매일신보』 및 大阪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거의 구독하고 있었다.

36) 崔麟, 「自敘傳」(『韓國思想』 제4집, 164쪽).

37) 박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199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91~102쪽.

38) 「孫秉熙 신문조서(제1회)」, 1919. 4. 10,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4쪽)

39) 「孫秉熙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80쪽).

40)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49쪽).

그런데 손병희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에는 과연 그가 민족자결주의의 본질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다.

“... 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조선민족에 대하여 민족자결주의를 선언서에 의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강화회의에 청원서를 낸 것은 원래 민족자결이란 것이 이 강화회의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유럽에만 한정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조선과 같은 곳에서도 다 그 민족자결이란 것에 의하여 독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들 조선인도 강화회의에 청원하면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한 일이다. 그리고 강화회의에 그것을 내면 반드시 그것이 토의에 오르고, 토의에 오르면 자연히 그 일에 대하여 일본과 교섭이 시작된다. 그러면 독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강화회의의 교섭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성공될는지 어떨지는 기약할 수 없으니, 또 일본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귀족원, 중의원 양의원에도 마찬가지로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또 윌슨에게 청원서를 보낸 것은 민족자결이란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으므로 그 사람에게 청원하면 꼭 동정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자연히 조선의 독립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 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그러한 병합에 반대라든지 어떻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재의 세계대세가 이러한 사조이니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여 조선도 독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선언서를 발표한 것이다.”⁴¹⁾

즉, 손병희는 민족자결주의가 유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도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강화회의의 청원만으로 독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본 정부와 귀족원, 중의원은 물론 윌슨 대통령에게도 청원을 하는 전 방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민족대표들의 경우도 손병희와 비슷한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동진은 1918년 11월경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어 강화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大阪毎日新聞》 기사를 보고 조선도 이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결심하였다. 그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오세창, 최린과 함께 손병희를 찾아가 계획을 보고하고 승낙을 얻었다. 특히 그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기독교 등 타 종단과도 기꺼이 연합함으로써 종교 이념을 초월한 3·1운동과 한국민족주의의 특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²⁾

그러나 그는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강화회의가 열리는 국제 정세를 독립운동에 활용하려 한 것은 분명하나, 그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나는 작년 11월 중에 대판매일신문지상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평화회의에 제출한 의제 14개조 중에서 민족자결의 한 조항을 보고 조선도 이 문제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어서 조선, 아일랜드, 폴란드 등 다른 나라도 그 범위에 들어간 13개국 국민 중 미국 주재자가 윌슨

41) 「孫秉熙 신문조서」, 1919. 8. 21, 고등법원,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2, 16~17쪽.

42) 장석홍, 「권동진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학논총』 3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651쪽.

이 제창한 자결문제에 대하여 연맹대회를 열고, 13개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에게 알려달라는 취지를 전보로 발송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뒤 위의 결의가 미국정부에 접수되어 상원 외교조사부에 회부되었다는 것이 모두 일본 신문에 나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나는 민족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뜻을 세우고, 우선 동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⁴³⁾

권동진의 다음의 문답 내용은 그가 민족자결주의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問 : 피고가 독립선언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작년 11월 이래 신문지상에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이란 것이 제창되고, 외국에 있는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은 후 부터라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이란 것이 일본과 조선과 같은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는가?

答 : 나는 그때 독립을 선언하면 평화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혹은 독립국으로서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고, 미국 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민족자결은 전란에 관계없는 지역에 있는 조선과 같은 나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선독립운동을 기도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권동진은 조선의 독립이 강화회의 등 국제적 합의로 달성될 것으로 바라고 있었다. 이는 강화회의의 본질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이었다. 강화회의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이 제시되는 가운데 국제관계의 민주주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거래의 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강화회의 결과 민주주의적 원칙과 제국주의적 요구와의 타협의 산물로 전승국에 의한 새로운 제국주의적 지배 체제가 재편되었을 뿐이다.⁴⁴⁾ 권동진의 강화회의의 기대 관련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선언서를 배포하고 총독부 및 일본의 귀족원과 중의원 양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또 파리의 강화회의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국제연맹회에서 문제가 되고, 아울러 강화회의 쪽에도 문제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 그리고 국제연맹의 문제가 되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⁴⁵⁾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신문조서를 오독한 결과 민족대표들의 민족자결주의 인식 문제의 해석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병헌의 『三一運動秘史』에 수록된

43)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41~42쪽).

44) 이만열, 「민족운동과 민족자결주의」, 269쪽.

45) 「權東鎭 신문조서」, 1919. 8. 20, 고등법원,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2, 12쪽).

신문조서의 번역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그것은 손병희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구라파주에만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조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거나,⁴⁶⁾ 권동진이 민족자결주의의 적용범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평화회의에서 독립 문제가 실현되기는 어려우나 그 취지 자체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견해 등이 그것이다.⁴⁷⁾

이 견해들은 민족대표들이 민족자결주의의 적용 범위에 대해 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이고 이용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의 중요한 논거가 되어 왔다. 즉, 민족대표들이 민족자결주의의 한계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능동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민족자결주의의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3·1운동 주도 인물 가운데에는 오세창이나 최남선처럼 민족자결주의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⁴⁸⁾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대표는 물론 민중들에게 민족자결주의가 커다란 희망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세계 사조에 대한 기대로서, 이를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2·8독립선언을 주도한 동경 유학생들이었다. 2·8독립선언문 결의문 제3항에 “本團(朝鮮獨立青年團; 필자)은 萬國平和會議에 民族自決主義를 吾族에게 適用하기를 청구함”이라 되어 있다. 이는 민족자결주의가 패전국이 보유한 식민지 외에 우리처럼 승전국의 식민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던 것이다.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희망적 기대를 걸었던 것은 여타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의 경우도 대개 비슷한 인식 양태를 보인다. 신석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問 : 민족자결이란 것은 구주 전란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역의 일부 민족에 관한 것이지 전란에 관계없는 세계 전체의 민족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46) 慎鏞廈, 「三一獨立運動의 社會史(上)」, 『韓國學報』 30, 12쪽. 이는 손병희가 민족자결주의가 단순히 유럽에만 한정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조선과 같은 곳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오역함으로 인한 중대한 오류이다.

47) 이만열, 「민족운동과 민족자결주의」, 278쪽. 이는 월슨이 평화회의에 제출한 의제 14개조 중에서 민족자결조항을 보고, 조선도 이 문제의 범주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을 오역한 결과이다.

48) 오세창은 민족자결주의의 적용 범위를 묻는 질문에 “전란에 관계된 나라에 있어서는 실행되고 그 밖의 나라에 있어서는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하였고(「吳世昌 新聞조서」, 1919. 4. 9, 경성지방법원,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 1運動 I)』 12, 52쪽), 최남선은 “... 나는 민족자결은 물론 환영하는 바이나 민족자결이란 것이 어떠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민족자결이라고 해서 이것을 몽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고 말했다. ...” (「崔南善 피고인 新聞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 『三一運動秘史』, 658쪽)고 하여 그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답 : 나는 세계의 전 민족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한다.⁴⁹⁾

신홍식 역시 민족자결주의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 ... 나는 경성서 발행하는 매일신보에서 약소민족의 자결이라고 한 기사를 보았으므로 조선도 그 문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 또 매일신보에 조선에서는 그 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사가 났으므로 조선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일제는 처음에는 민족자결주의란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8년 후반에 들어 민족자결주의가 국내 지식인 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자, 일제는 기존의 입장을 바뀌어 이를 적극적 보도하여 민족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에 부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민족자결주의가 엄청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자 결국 이듬해 1월 17일 《매일신보》 등에 보도통제를 실시하였다.⁵⁰⁾ 상기 신홍식의 답변은 일제가 기관지 《매일신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족자결주의를 부정, 비판한 것이 오히려 조선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춘수 또한 1919년 1월경 《대판매일신문》에 민족자결이 제창되어 각 민족이 평화적으로 자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조선도 민족자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⁵¹⁾

이로써 보면 손병희와 권동진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던 중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강화회의가 개최되는 등 우리의 독립운동에 유리한 조건과 상황이 조성되자 이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여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물론 나머지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거나 정확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들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낭만적 기대와 환상을 크게 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그 적용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를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려 한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IV. 東洋平和論 과 先朝鮮獨立論 의 주장

49) 「申錫九 신문조서」, 1919. 5. 5, 경성지방법원(『三一運動秘史』, 502쪽).

50) 일제는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보도통제를 3월 6일자로 해제하였다. 그 까닭은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과대한 풍설이 유전되어 오히려 민심을 미혹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로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해당 부처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발표, 게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姜德相, 『現代史資料』 25, 미즈즈書房, 1972, 123~124쪽). 이는 일제가 3·1운동 발발 직후, 그 원인이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려 한 것이라 여겨진다.

51) 「鄭春洙 신문조서」, 1919. 5. 3, 경성지방법원(『三一運動秘史』, 554쪽).

손병희 등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조선의 독립이 일본에도 유리하며 동양평화를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그의 15개 죄상 중 하나로 ‘동양평화를 교란시킨 일’을 지적한 바 있듯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⁵²⁾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의 원론적 구조를 상기시키고 현재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조선을 독립시키도록 추동하겠다는 전략적 논리였다.

손병희는 1919년 1월 20일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권동진·오세창·최린에게 독립선언서의 文意는 감정에 흐르지 말고 온건하게 하고, 동양평화를 위해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그는 세계 개조의 시기를 맞아 독립선언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면 그들이 동양평화를 위하여 조선을 독립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⁵³⁾ 이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는 동양평화론을 동양 3국간의 관계 및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란 구도 속에서 논의하며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조선을 독립시키면 중국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며 장래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또 나는 우리 동양에 수많은 국가를 세워 두는 것보다 동양 전체를 일단으로 가장 덕망이 높은 사람을 주권자로 하여 서양 세력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본 한 나라를 가지고서는 서양 세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일단으로 하여 침략이란 것을 끊어 없게 한다면 각 민족 서로 친화하여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조선은 일본과는 국정이 서로 틀리지만 중국과는 서로 닮아 있으므로 조선이 독립되면 중국의 여론에 호소하여 동양을 일단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 일도 있다.”⁵⁴⁾

여기에서 동양평화론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양평화론은 삼국제휴론, 삼국공영론, 동양주의 등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문제는 사용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⁵⁵⁾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이 같은 동양평화론을 주장하였듯이 일본과 조선이 사유한 동양평화론은 그 구조가 달랐다. 일본인의 동양평화론은 대륙침략론으로서 아시아연대론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의 동양평화론은 친일파와 애국계몽언론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가 각각 달랐고, 그 결과도 강제병합과 독립운동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의 동양평화론은 상충할 수밖에 없었고, 침략적 동양평화론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진정한 동양평화론자인

52)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6, 3~4쪽.

53) 「孫秉熙 신문조서(제3회)」, 1919. 7. 14,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28쪽).

54) 「孫秉熙 신문조서(제1회)」, 1919. 4. 10,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4~65쪽).

55)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통권 11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155~157쪽.

안중근이 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양 민족에 대한 신앙적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거나,⁵⁶⁾ 천주교의 영향과 안중근의 독창적 견해로 보는 것을 반박하며 1900년대 후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중시되는 한국 지식인의 현실 인식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⁵⁷⁾ 등이 있다. 그런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구조는 조선의 독립 → 동양 삼국의 동맹으로 동양평화 실현 → 서양 세력 침략 방어 및 세계 평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결국은 先朝鮮獨立論의 국권회복과 독립전쟁 방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손병희의 답변 중 '장래 일본이 동양의 맹주' 운운하여 일본맹주론을 긍정하는 것은 삼국제후론이나, 일본이 주장한 아시아연대론의 논리로 오해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손병희는 先朝鮮獨立을 주장하고 일본의 한국이나 중국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과 차별적이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일본은 동양에서 이미 고립되어 한국민으로부터 독립전쟁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으며, 청국 관민들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만일 일본이 계속하여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꺾박한다면 이것은 일본 자체에 파멸을 자초할 것이다. 동양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주권을 돌려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그 후로 서로 독립한 청·한·일 삼국이 동맹하여 일심협력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나아가서 한·일·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서로 화합하여 개화의 域으로 진보해서 유럽과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동양평화는 실현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권동진은 더 나아가 동양평화론을 백인종과 황인종의 인종 대결과, 동양과 서양의 지역적 대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일본은 동양에서의 선진국으로 동양 전체를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고, 평화회의에서는 5대 국의 하나가 되어 있는데도 일본이 제출한 인종 차별 금지 문제는 채택되지 않을 모양이고, 백인종은 여전히 동양 인종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리어 일본과 중국이 평화회의 안에서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은 일본이 중국과 제휴하여 인종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본이 馬關조약을 무시하고 조선을 병합했으니 나아가서 만주, 몽고도 침략하려는 야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중국은 제휴할 수 없는데, 그것은 결국 조선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⁵⁸⁾

56) 洪淳鎬, 「安重根의 『東洋平和論』」, 『교회사연구』 제9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58쪽.

57) 崔起榮, 「安重根의 『東洋平和論』에 대한 논평」, 『교회사연구』 제9집, 64쪽.

58)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48쪽).

이 같은 인종 대결 인식은 곧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한 논리로서, 러일전쟁을 인종전쟁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인식은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하면 한·청·일이 위기에 처하고 황인종이 멸망할 것이라고 보고 삼국의 동맹을 주창하였던 것이다.⁵⁹⁾ 결국 삼국제휴론은 ‘동양 삼국이 연합해야 동양 문명과 황인종 보호가 가능하다’는 인종주의적 세계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시 《황성신문》의 논조는 물론 장지연이나 윤치호 등 지식인 계층의 보편적 사고 체계였다.⁶⁰⁾

권동진은 이 논리에 바탕을 두고, 일본이 황인종인 동양 삼국을 연합케 하여 백인종에 대결할 생각을 갖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일본이 오히려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을 침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일본과 중국이 제휴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조선이니, 조선을 먼저 독립시키는 것이 곧 인종 대립에서 승리하고 동양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이라고 추켜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을 ‘동양에서의 선진국’ 운운하며 부추겨 先朝鮮獨立論을 주장한 것은 손병희나 권동진이 같은 인식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흥식 역시 일본이 동양 평화를 역설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일본이 동양 평화를 보장하려면 조선의 독립이 필요한 것이라며 先朝鮮獨立論을 주장하였다.⁶¹⁾

이로써 보면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조선 독립의 논리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을 제기하고 일본의 역할을 부추기며 先朝鮮獨立論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V. 상반된 政體論의 주장

민족대표 가운데에는 聯邦制를 주장하거나⁶²⁾ 특별히 정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대부분 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정을 추구하였다. 손병희는 광무황제의 흥거에 대한 감상을 묻는 일본인 판사의 질문에 “별로 어떤 감상은 없다. 나이 많으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⁶³⁾ 나아가 그는 독립 이후 어떤 政體의 나라를 세울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民主政體를 추구한다고 명료하게 대답하였다. 또한 민주정체를 희망한 것은 자신 뿐 아니라 당시의 보편적 사상이었음도 지적하였다.

“민주정체로 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나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유럽전쟁이 한창일 때 교도들과 牛耳洞에 갇을 때,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상태가 일반하여 세계에 임금이란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⁶⁴⁾

59) 『皇城新聞』 1904년 10월 1일 및 1904년 2월 12일자 논설.

60)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172~173쪽.

61) 「申洪植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12,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482쪽).

62) 「李鍾一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10,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쪽).

63) 「孫秉熙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81쪽).

권동진도 손병희와 마찬가지로 광무황제의 흥거에 대한 감상을 묻는 일본인 판사의 질문에 대해 “별로 하등의 감상도 없다”고 답하였고,⁶⁵⁾ 또한 순사가 광무황제의 장례에 拜別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추진한 것에 대해 추궁하자, 자신들은 일경이나 관청에 탐지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다가 학생들이 3월 3일에 한다 하여 급히 서둘러 실행한 것뿐이라고 답변하였다.⁶⁶⁾ 이는 3·1운동과 광무황제의 拜別은 무관하다는 것으로, 더 이상 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그는 광무황제의 국장에 참배하기 위해 상경한 많은 사람들이 涕泣慟哭하는 것은 군신의 정으로서 통곡하는 것보다, 만일 그가 살아 있었다면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이전처럼 독립국으로 하여 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이 깨어진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李태왕 전하의 흥거 때에도 국장을 참배하기 위하여 서울에 모인 많은 조선인이 체음통곡 했는데 조선에는 임금이 신하를 초개와 같이 본다면 신하도 임금을 적으로 본다(君而視臣草芥臣亦視君如敵)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임금과 신하의 정이 소원했는데 이번 국장 때에 본 바와 같은 상황은 李태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족자결의 문제가 제창되고 있으므로 李태왕이 생존해 있으면 혹은 이전과 같이 독립국으로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흥거에 의하여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듯 살아나 병합 당시의 일을 상기하고 망국이 된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⁶⁷⁾

신홍식도 정채론에 대해 신문을 당하였는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전에 깊이 생각하지 않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독립이 되면 민의에 따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⁶⁸⁾ 그런데 정춘수는 국권을 회복한 뒤 자신들이 국가의 정치를 하려고 하였다고 답변하였다.⁶⁹⁾ 손병희가 독립 이후 자신은 전혀 벼슬길에 나갈 생각은 없고 종교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손병희와 정춘수의 상반성은 정채론에서 극명히 대비된다. 정춘수는 2월 중순 서울 영신학교에서 오화영·이승훈·박희도·신홍식을 만나 만세운동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천도교와의 합동을 반대하고 시종일관 독립이 아니라 자치를 청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64) 「孫秉熙 신문조서(제3회)」, 1919. 7. 14,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28~129쪽).

65) 「權東鎭 피의자 신문조서」, 1919. 3. 10,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184쪽).

66) 「權東鎭 경찰 신문조서」, 1919. 3. 1,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179~180쪽).

67)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49쪽).

68) 「申洪植 경찰신문조서」, 1919. 3. 1,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477쪽).

69) 「鄭春洙 경찰신문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548쪽).

“ … 나는 그 때 민족자치가 마땅한가 조선독립이 마땅한가고 물었다. 그 때 다른 사람들은 독립이든지 자치든지 좋은 방법을 말하라고 하므로 나는 독립은 아직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독립은 하려면 다른 데 간섭 없이 조선 사람만으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결이란 것을 이해하며 민족자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조선 민족 자치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기타 조선내의 각 사회단체 또는 각국 영사관에게도 그 일을 통지하자고 하였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에서 청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까지든지 뜻을 이룰 때까지 몇 번이고 청원하자고 하였다. … 나는 민족자치의 청원서에 명의를 내는 것은 승인하였어도 독립선언서에 명의를 내는 일은 승인한 일이 없다. … ”⁷⁰⁾

또한 그는 민족자치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선은 조선 사람이 다스리며 일본의 원조에 의하여 정치를 하고 그 政體는 그 때의 여론에 좇아서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치의 의미를 되묻자 자치는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원조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제 강점기 자치론은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과 식민지 실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선인의 정치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독립의 전 단계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체호는 이를 내정 독립론, 참정권이나 자치운동론을 일제가 친일파를 앞세운 ‘狂論’이라고 일갈하고 이에 부화하는 자들을 盲人이 아니면 奸賊이라고 질타하였다.⁷¹⁾ 자치론자들은 3·1운동 이후 식민지 의회 설립운동을 벌였고, 일본 내 제1 야당인 憲政會가 조선자치론을 주장하였으나, 하세가와 총독이나 조선군참모부 등 군부는 자치론조차 반대하였다.⁷²⁾

정춘수는 민족대표는 물론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자치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 나름대로는 일본의 기반을 벗어나되 독립 보다는 우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치를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민족대표나 민중의 의사와는 괴리된 논리였다. 다음의 문답은 그의 자치론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問 : 피고는 이 선언서에 기재된 취지와 같이 조선 독립을 허하여 달라고 청원한 데 찬성하였는가?

答 : 나는 자치권을 달라는 것을 청원할 생각으로 명의를 내는데 찬성하였지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나의 의사가 아니다.

問 : 피고는 독립선언서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가?

答 :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있으나 나는 독립 청원할 의사가 없고 그 선언을 하는 것

70) 『鄭春洙 신문조서』, 1919. 3. 21, 서대문감옥(『三一運動秘史』, 550~552쪽).

71) 申采浩, 「朝鮮革命宣言」(『단재신체호전집』 제8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893쪽).

72) 임경석, 「3·1운동기 친일의 논리와 심리」, 『역사와 현실』 69, 한국역사연구회, 2008, 66~70쪽.

도 나의 의사가 아니므로 3월 1일에 오지 않았다.

問 : 민족자치란 것은 무엇인가?

答 : 독립이라 하는 것은 일본과 전연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고 민족 자치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주권을 얻어 자치하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인데 자못 한일합병 전의 통감부 시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問 : 민족 자치를 한다면 어떠한 정체를 구성하려고 생각하였는가?

答 : 그것은 일본 정부에서 자치를 허락한 후 공화정체나 전제정체를 할 것을 결정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問 : 그러면 피고의 민족 자치라고 하는 것은 독립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答 : 나는 보호국이 되는 것이 독립국이 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였다.

3·1운동으로 피체된 민족대표는 물론 일반인 가운데에서도 한일합병 전의 통감부 시대와 같은 상태에서 일본의 지도를 받으며 자치를 하며, 더욱이 보호국이 되는 것이 독립국이 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은 정춘수가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춘수는 독립과 자치를 엄밀히 구분함은 물론 선언과 청원의 의미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신석구와의 대비에서 청원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신석구는 청원이란 것을 완전 독립을 승인하청원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형식상 청원이라 한 것이라며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듯 한 답변을 하였다.

問 : 그대들이 기도한 독립운동의 방법은 무엇인가?

答 : 일본 정부에 조선민족이 독립하니 승인하라고 쓴 것을 보내는 것이다.

問 : 그것은 독립의 승인을 원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答 : 원한다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조선민족은 정신적으로 독립해 있지마는 사실상으로는 아직 독립해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완전하게 독립했다는 것을 승인해 받기 위하여 쓴 것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쓴 것의 형식이 청원이란 것으로 되어있으니 굳이 청원이라고 한다면 청원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냥 청원서를 낸다는 것이 된다.

이로써 보면 손병희, 권동진, 신석구, 신흥식 등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모두 군주제를 부정하였고 민주공화 정체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춘수만은 독립 선언을 반대하고 청원과 민족 자치를 주장하였고, 통감부 시대의 보호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답변을 한 것은 3·1운동과 그 정신에 전혀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춘수의 답변 내용은 자수 직후와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의 신문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3월 7일 경무총감부에서 일본인 순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분명히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기 위해 선언서를 인쇄하여 발표하였다', '조선 독립을 할 목적으로', '양 민족

은 동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립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마음먹게 되었다.’ 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자치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다른 민족대표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3월 21일의 서대문감옥 신문 때에는 조선도 민족자결에 의하여 독립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자치론을 펴고,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종교 사업이나 하겠다고 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기보호라는 본능적 행위일 수 있으나, 이후의 행적과 연계되어 평가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VI. 播種論의 피력

대부분의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확신하고는 있었으나, 만세시위를 한다고 하여 당장 독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지는 않았다. 이는 손병희 등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이 피력한 이른바 파종론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손병희는 3·1운동 발발 직전 교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⁷³⁾

충북 출신 민족대표의 파종론은 권동진과 신석구의 답변에서 명쾌하게 전개되고 있다. 권동진은 3월 10일 경무총감부에서 검사 下村靜永의 심문에 대해 “지금 독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뜻을 가지고 씨를 심어 놓으면 장래 기필코 열매가 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파종론을 전개하였으며,⁷⁴⁾ 고등법원에서는 南常藏과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신문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민족대표 중 가장 적극적인 파종론을 벌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問 : 피고가 위와 같은 일을 한 취지는 강화회의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고 하는 식의 우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

答 : 나로서는 그와 같은 깊은 목적은 없었다. 다만 우리들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 두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누군가가 독립이 잘 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으로 곧 바로 그 결과까지 보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問 : 그와 같이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 수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꼭 어떻게라도 해서 그 결과를 볼 계획이었던 것이 아닌가?

73) 李東洛, 「孫秉熙敎主의 密命을 받고」, 『新東亞』 1969년 3월호, 343쪽.

74) 「權東鎭 피의자 신문조서」, 1919. 3. 10,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185쪽).

답 :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問 : 피고 등은 선언서를 발표하여 조선 안에서 독립의 소리를 높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강화회의에서 문제가 되게 한다면 반드시 조선의 독립은 획득할 수 있다고 믿고서 한 일이 아닌가?

답 : 즉시 독립을 획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하여간 문제에 오르리라고는 생각했었다.

問 :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독립이 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 되지 않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여간 강화회의에서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독립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만일을 위하여 요행을 바랐다는 것인가?

답 : 그렇지도 않으나,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 두면 수년 뒤에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 독립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⁷⁵⁾

신석구도 적극적인 파종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독립선언서 첫머리의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였다는 부분을 문제 삼아 심문하는 예심판사 永島雄藏의 심문에 대해 “완전히 독립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독립선언을 함으로써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다음과 같은 신문을 주고받았다.

問 : 피고는 독립국이 꼭 되려고 선언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언을 하는 데만 그치려고 한 것인가? 정부가 조직되지 않고 실력도 없이 독립청원을 하고 있으므로 독립국이 된다고 믿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답 : 형식상 금일 조선 독립은 성립되지 않고 있으나 씨를 심을 때에는 추수가 있을 것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청원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청원이 아니고 독립한다는 것을 통지한 것이다. 우리가 대표자로서 명의를 낸 것은 조선인 전체가 이 의견이라고 생각한 것이며 세계 각국이 민족자결을 제창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독립이 되리라고 믿고 또 그 일을 일반에 통지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쇠시술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있다.⁷⁶⁾

신석구는 자서전에서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였고, ‘독립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는 심정’으로 민족대표에 참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그러나 곧 독립이 되리라고는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 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터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정신을 심을 것이다. ... 그 때 어느 형제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떤 선생님께서 말한 즉 그 선생님 말씀이 시기상조라 합디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도 이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오 독립을 심으려 들어가노라 하였다 ...”⁷⁷⁾

75) 「權東鎭 신문조서」, 1919. 8. 20, 고등법원,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2, 12~13쪽).

76) 「申錫九 신문조서」, 1919. 5. 5, 경성지방법원(『三一運動秘史』, 500~501쪽).

이로써 보면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파종한 자주독립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발아하였고 1920년대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으로 만개하였던 것이다.

VI. 종교 계몽주의자의 한계

민족대표들은 종교계의 대표자이자 계몽주의자들로서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손병희는 천도교 교주로서 러일전쟁 때 자신이 군자금 1만원을 일제에 헌납하고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할 때 천도교에서 지원한 것은 일본이 깨어지면 동양이 파멸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그의 일본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만의 한계가 아니라, 한말 지식인의 공통적인 시대인식이었다. 예컨대 상동청년회의 주요 멤버였던 鄭淳萬·李儁·李玄錫·柳鍾益 등이 1904년 적십자사 설립운동을 전개하며 그 이유로써 “백인종들도 일본을 돕는데 같은 황인종인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며 「同志勸告文」을 발표⁷⁷⁾한 것은 당시 지성의 취약한 일본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말의 적십자사 설립과 러일전쟁 시 일본군 지원 운동은 당시 조선의 지성들이 지녔던 일본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즉, 그들이 청일전쟁이 일본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 일으킨 것이라든가, 러일전쟁이 일본이 우리와 청의 독립을 존중하여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을 위한 행위라고 여긴 것 등은 일본인식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안중근 역시 러일전쟁을 이른바 동양주의에 의해 백인종과 황인종의 대결로 인식하고, 이를 동양 평화와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식하였던 것도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손병희는 천도교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전술한 정교분리 논쟁에서도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기도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그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가 천도교였기 때문에 최우선 사업으로 독립운동을 선택하였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의 답변은 천도교와 나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77) 한국감리교회사학회편, 『신석구목사자서전』, 84쪽.

78) 『官報』 第二千八百號, 1904년 4월 14일자.

問 : 피고는 평소 지방의 천도교 도사 중에서 신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한 몸 및 천도교를 희생하더라도 조선의 독립 사업에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왔다는 데 어떤가?

答 : 그런 일은 없다. 가령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다. 또 천도교 단체를 만드는데 60만 명쯤의 생명을 잃었고 많은 고심을 했으므로, 나는 나라 보다 천도교 쪽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하여 천도교를 희생하려는 것과 같은 생각은 없다.⁷⁹⁾

한말 초기 의병들은 민족이나 국가를 전제하지 않고,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봉기하였기 때문에 민족운동 보다 道權運動이나 儒林運動의 성격을 지녔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점차 의병들은 민중성을 강화하며 민족운동의 주류를 이루어 나갔다. 그런데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수장인 손병희가 이 같이 종교계몽론에 경도된 답변을 하였다는 사실은 향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손병희 등은 계몽론자로서 민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민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견해도 있으나,⁸⁰⁾ 이는 너무 과도한 표현이며 국가는 文明創出 主體로서 인식되 民衆은 夢寐한 존재로 인식⁸¹⁾했던 한말 계몽론자들의 인식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손병희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국권회복 의견서를 총독부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학생 신분으로 함부로 일으켜서는 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세간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또한 그는 파고다 공원에 모인 민중들을 '思意 淺薄한 學生과 群衆'이라고 표현하였다.⁸²⁾ 그래서 권동진의 제안에 따라 독립 선언의 장소를 변경한 것이었다. 권동진은 학생들과의 연합을 '유해무익'한 일로 보고 장소 변경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 李甲成이 내일 파고다공원에서 우리들이 독립선언을 발표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공사립학교 학생 전부가 응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나는 그것은 큰 일로 현재 국장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다수 서울로 오고 있으므로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하고, 선언서는 낭독하지 않더라도 배포하면 지장이 없으므로 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였더니, 요리점이 좋겠다고 하여 명월관 지점을 장소로 선정하고 ... 2월 28일에 孫秉熙의 집에서 회합했을 때 李甲成이 학생과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같은 말을 흘려 우리들은 그것은 유해무익한 일로 선언서를 발표하는데 그런 원조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크게 반대했으며, ... 우리들은 학생과 일을 함께 하는 것을

79) 「孫秉熙 신문조서(제3회)」, 1919. 7. 14,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28쪽).

80) 김성보, 「3·1운동에서 33인은 '민족대표'가 아니다」, 『역사비평』 7호, 1989, 166쪽.

81) 鄭昌烈, 「開化思想의 歷史認識」, 『開港前後와 韓末의 歷史認識』, 國史編纂委員會 第10回 韓國史學術會議, 1987, 17~22쪽.

82) 「孫秉熙 경찰신문조서」, 1919. 3. 1, 경무총감부 및 「孫秉熙 피고인 신문조서」(『三一運動秘史』, 74, 77쪽). 박희도는 독립선언 장소를 바꾼 이유를 “무식한 자가 불온한 일을 할지 알지 못하여”라고 답하였다.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⁸³⁾

정춘수도 민중을 ‘유치’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이 독립선언서가 배포되면 까닭도 모르도 돌아다니며 소요를 일으켜 질서를 어지럽힐 것으로 염려하였다.

“ … 인민의 정도가 유치하므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 조선이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고 규율이 없이 소란할지도 모르니, 그것이 걱정이라고 했더니 郭明理는 그렇다면 자기가 경찰에, 李可順이 부청에 그 선언서를 가지고 가서 잘 설명하기로 하자고 하므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으며, 또 李可順과도 만났는데 동인은 관청에 가서 설명하는 이외에 도매상이나 회사에는 선언서를 몇 장씩 봉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므로 나는 서울로 가니, 이곳의 일은 두 사람이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인민이 시내에서 소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므로, 나는 선언서를 배포하면 인민이 까닭도 모르고 소요하여 돌아다니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⁸⁴⁾

손병희의 민중 불신론은 3·1운동 직전 그가 대도주 박인호에게 보낸 ‘諭示文’에서도 재확인된다. 손병희는 박인호에게 천도교의 관리와, 자기가 피체되고 난 뒤 교도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유시문을 내렸다. 이를 문서의 형태로 보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령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問 : 그리고 피고는 천도교의 대도주인 朴寅浩에게 금년 2월 28일 오전 11시경에 독립운동의 계획을 말했다는데 어떤가?

答 : 날씨는 기억하지 못하나, 朴寅浩에게 그대는 천도교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교의 일은 모두 그대에게 맡겨져 있어 안심하고 있는데, 조상은 4천년 이래로 이 조선을 분묘의 땅으로 하고 있으니 이제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나라를 위하여 진력하기로 하는 바 그대는 어디까지나 종교를 위하여 진력해 달라고 하고, 또 다수의 사람이 자기를 따라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니 그때에는 교도를 감독하여 단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써서 주었던 것이다.

問 : 왜 서면에 적어서 주었는가?

答 : 그것은 딴 사람에게 보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면으로 써주었던 것이다.⁸⁵⁾

그런데 일제는 위의 손병희의 발언 중 천도교도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아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몰아가고자 하였다.

83) 「權東鎭 신문조서(제1회)」, 1919. 4. 8,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44쪽).

84) 「鄭春洙 신문조서(제2회)」, 1919. 7. 19,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56쪽).

85) 「孫秉熙 신문조서(제2회)」, 1919. 4. 11,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67~68쪽).

問 : 이 유서문에 망동을 일으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교도 중에서 망동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닌가?

答 : 그렇다. 내가 그런 몸이 되면 교도 중에 망동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한 것이다.⁸⁶⁾

손병희의 諭示文 내용은 박인호의 신문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훈유서의 내용을 묻는 신문에 대해 “자기(손병희)는 시국을 위하여 일어선다, 너는 천도교 쪽의 일을 잘 맡아서 경거폭동을 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포교의 일에 힘쓰라는 등의 것이 써어 있었다.”고 답하였다.⁸⁷⁾

이로써 보면 손병희는 자기가 3·1운동을 주도할 경우, 천도교에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박인호에게 특별히 천도교를 잘 관리하고 포교에 힘쓰고 교도들이 자신의 피체에 격분하여 경거폭동하지 말 것을 유서문으로 명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천도교가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한 답변은 천도교에 대한 그의 애정을 과도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나, 학생이나 민중을 역사변혁의 주체로까지 인식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이는 계획 초기 단계에 그들 스스로 수립한 3대 원칙 중 대중화의 원칙을 위배한 모순된 인식이다.

그러나 민족대표의 대표성과 역할을 부정하는 논리로서 이들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민중과 차단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신중을 요한다. 왜냐하면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대표들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거나, 지방의 만세시위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등 직접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오화영과 유여대의 경우에서 입증되었다.⁸⁸⁾ 충북 출신 정춘수도 자신이 시무하던 원산의 만세시위를 장로교회 장로 李可順과 전도사 郭明理에게 독립선언서의 배부 등을 지시하여 원산의 만세시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⁹⁾

그런데 손병희가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충북의 만세운동과 연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손병희가 일제의 신문에 대한 답변과 실제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즉, 손병희는 3·1운동 직전 광무황제의 인산에 배관하기 위해 상경한 고향 후배 洪命燾와 韓鳳洙를 자택에서 만났다. 이는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仁山里 洪命燾는 경술국치에 순절한 금산군수 洪範植의 장남으로서 고종황제의 국장에 조문 하고자 하여 전기에 서울로 올라왔다. 마침 淸州人 전일 의병장 韓鳳洙를 만나서 孫秉熙 자택을 동

86) 「孫秉熙 신문조서(제3회)」, 1919. 7. 14,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29쪽).

87) 「朴寅浩 신문조서」, 1919. 8. 29, 고등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2, 118쪽).

88) 허동현, 앞의 「3·1운동에 미친 민족대표의 역할 재조명」 참조.

89) 「鄭春洙 신문조서(제2회)」, 1919. 7. 19, 경성지방법원(『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1運動 I)』 11, 155~156쪽).

반 방문하였다. 의암은 반갑게 영접한 후 독립선언서를 내놓고 독립운동에 대한 제반사를 설명한 후, 제군도 우리고장 청주와 괴산에 책임지고 이 운동에 협력 활약해 주기를 신신당부하였다. 그 연사에 감격한 洪命燾는 다음날 선언식과 인산에도 참가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와서 즉시 각 면 유지들을 찾아 의거할 것을 모의하고 … 또한 청주 韓鳳洙와 자주 연락하여 기맥을 상통하였다.”⁹⁰⁾

한봉수는 귀향 직후인 3월 7일의 청주 장날, 서문동 牛市場에서 장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인 셈이다.⁹¹⁾ 만세운동의 기획을 노리던 한봉수는 4월 1일 밤, 고향인 세교리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2일 정오경에는 여기에 모인 장꾼과, 마침 그곳을 지나던 內秀普通學校生 85명과 교사들을 주도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⁹²⁾ 사형선고를 받았던 의병장 출신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의병에서 3·1운동의 맥락을 실증하는 것이자, 의병장 출신이 어린 학생을 주도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로서 3·1운동의 거족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⁹³⁾

홍명희는 3월 19일 괴산 장날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미리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선두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⁹⁴⁾ 이날 6백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서로 몰려가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석전을 벌여 경찰서를 파괴하는 등 이튿날 새벽까지 격렬히 투쟁하였다. 이날 저녁 괴산공보 학생들은 장터에 모였던 군중들과 연합하여 장터를 행진하였는데,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일제는 헌병경찰과 보병 장교 등을 급파하여 엄중히 경계하였다.⁹⁵⁾ 그러나 다음 장날인 3월 24일에는 홍명희의 동생 洪性燾의 주도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29일의 장날에도 연속하여 만세시위가 벌어졌다.⁹⁶⁾

이로써 보면 손병희를 만났던 한봉수와 홍명희는 실제 고향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폭동을 염려하여 독립 선언의 장소를 변경하고, 민중을 역사 변혁의 원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계몽주의적 한계를 노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대표와 민중이 완전히 절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손병희나 정춘수 등 충북 출신 민족대표와 오화영, 유여대 등 여타 민족대표의 경우에서 지역적 연고를 배경으로 고향과 연계하거나 직접 시위를 계획하고 지도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의 모순된 인식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90) 李龍洛, 『三一運動實錄』, 1969, 482쪽.

9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79쪽 및 李龍洛, 『三一運動實錄』, 494쪽. 그러나 일제측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다.

92) 『韓鳳洙判決文』(『독립운동사자료집』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1100~1101쪽).

93) 박길순, 「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269쪽.

94) 『洪命燾判決文』(『독립운동사자료집』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1079~1080쪽).

95) 高第七九五七號, 1919. 3. 20,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二一報)」(『三一運動編』(一), 320쪽).

96)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괴산문화원, 1996, 109~111쪽.

VIII. 맺음말

본고는 3·1운동을 주도하고 피체된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의 경무총감부, 서대문감옥,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지에서 일본 경찰, 검사, 판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에 나타난 독립사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은 3·1운동의 초기 단계를 주도한 민족대표 중 6명을 배출하였다. 이 중 손병희는 운동자금을 지원하고 3대 원칙을 수립하는 등 만세운동을 총괄 지휘하였다. 권동진은 오세창, 최린과 함께 만세시위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3인 중의 한사람으로서, 손병희가 만세시위를 결심하도록 추동하고 타 종단과 연합을 추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권병덕은 손병희의 승례로서 주저 없이 참가하였고, 신석구·신홍식·정춘수는 기독교 목사로서 우리의 독립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참가하였다.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독립을 확신하였다. 이들은 우리 민족은 절대로 일제에 동화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으며, 식민지 시혜론과 근대화론을 펴는 판사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세계 개조의 신기운이 팽배한 국제 정세를 예의 주시하며 독립운동의 기회를 노렸다. 천도교측은 이미 1910년대 초부터 천도구국단이나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모색해 오던 중, 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 제창 소식을 듣고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독립이 일본에게도 유리한 것이라는 논리로 일제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손병희와 권동진은 물론 대부분의 민족대표들은 민족자결주의의 적용 범위나 한계 등에 대해 다분히 낭만적 기대와 환상을 넘는 정도의 인식은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민족대표들은 동양평화론의 원론적 구조를 상기시키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일제가 조선을 독립시키도록 추동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들이 말한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다만, 이들이 지녔던 동양평화론은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나,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립으로 보는 東洋主義的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先朝鮮獨立論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함이 옳을 듯하다.

손병희 등은 民主共和政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광무 황제의 흥거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었고, 오직 비밀리에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추진하는 것만을 최대의 과제로 여겼다. 그러나 정춘수는 민주공화정체와는 전혀 다른 정체론을 폈다. 그는 통감부 시대와 같이 일제의 지원을 받는 민족 자치를 희망하였다. 심지어 그는 보호국이 되는 것이 독립국이 되는 것 보다 낫다는 괴변을 펴며 다른 민족대표나 민중들이 지녔던 정체론과는 완전히 괴리된 답변을 함으로써 스스로 민족운동 대열에서의 이탈을 예시하였다.

그들은 당장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독립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는 심경으로 파종론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자신을 회생하며 파종한 자주독립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발아하였고 1920년대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으로 만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손병희 등 민족대표들은 종교 계몽주의자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이는 한말 이래 지성이 지녔던 일본관의 한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나, 일제의 침략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민족이나 국가보다는 종교를 우선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민중을 역사 변혁의 주체로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민중불신론을 보인다. 손병희 등이 학생 등의 소동을 우려하여 독립선언 장소를 변경하고, 諭示文을 통해 경거폭동을 금지케 한 것 등도 종교 계몽주의자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민중과 완전히 절연하였다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에 시무하고 있던 일부 민족대표들이 지방의 만세시위를 준비하거나 지도하는 경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병희가 한봉수와 홍명희를 통해 고향인 충북의 만세운동을 지시하여 실제로 만세시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닌 종교 계몽주의자로서의 한계와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2009.09.02, 심사시작:2009.09.03, 심사완료:2009.10.13]

주제어: 식민지 시혜론, 민족자결주의, 선조선독립론, 민주공화주의

<ABSTRACT>

The Thought of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from Chungbuk through the Public Trial Records of 3.1 Movement.

Park, Gul-sun

Chungbuk produced 6 people, Son Byeong-hee, Kwon Dong-jin, Kwon Byeong-duk, Shin Suk-gu, Shin Hong-sik and Jung Chun-su, among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This article is to organize their independence thoughts through the public trial records.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from Chungbuk denied the colonial domin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and convinced the independence. They believed to the Koreans could never be assimilated with Japanese imperialism and had a fierce fight with Japanese prosecutors and judges defending Colonial Benefit Theory and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ey aimed at the opportunity of independence movement observ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filled with new atmosphere of world reconstruction and National Self-Determination. It is considered, however, that they couldn't recognize beyond the romantic expectation and fantasy about the extent and the limitation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so well.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insisted the theory of oriental peace. The theory of oriental peace they insisted is similar with that of Ahn Joong-keun, and 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with Ito Hirobumi's. But their theory of oriental peace reveals its limitation of orientalism considering it as confront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or Mongoloid and Caucasian; this should be understood that this is a way to insist Pre Joseon Independence Theory.

Son Byeong-hee and most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sought for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But Jung Chun-su unfolded the theory of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is very different with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They didn't believe they could achieve independence so soon. They unfolded themselves that they were a grain for independence. Their independence mind that they had planted sacrificing themselves germinate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ut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disclosed their limitation as religious enlighteners. They believed Japan would protect Korea. This shows that they couldn't understand the real quality for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They also showed their limitation that they were concerned with religion over national people

or country. Furthermore, they showed the mass distrust theory that they couldn't recognize the general people as the main body of historical revolu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Hurrah demonstration is confirmed and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o unfold opinion that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severed relationship completely with the general people.

key word : Colonial Benefit Theory, National Self-Determination, Pre Joseon Independence Theory, the democratic republicanism